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서 윤 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

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

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

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에 따른

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

서울특별시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고,

각 실·국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에 대한

통합·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

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
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